

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) 결정(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30호(1996.12.1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중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59호(2001.8.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13호(2010.9.2.), 제2017-427호(2017.11.23.), 제2020-122호(2020.3.26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, 2023년 제2차 양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04.1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) 결정(변경)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4월 27일
양 천 구 청 장

1. 결정취지

‘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’ 내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하여 효력기간을 연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2.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

가.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

■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비고
기정	특별계획가능구역	양천구 신정동 1029-29 일대	7,558	2020.03.26. (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2호)

■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

구역명	효력기간		비고
	당초	변경	
특별계획가능구역	2023.03.26.	2025.03.26	-

3. 기타 결정사항 : 변경 없음.

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5.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620-3509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은 토지이음 고시정보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